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2. 22.(목) 06:00 < 2.22.(목) 석간 > 배포 2024. 2. 21.(수)

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, 산업부,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!

- 12개 업종별 협·단체 대상,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 간담회 열려
- '산업안전 대진단' 참여 독려, 원·하청 간 자율적인 산업안전 상생협력 확산 당부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와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2월 22일(목)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,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·단체*들이 참여한 「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

* 자동차·조선해양플랜트·철강·반도체·디스플레이·배터리·바이오·로봇·석유화학·섬유·기계·뿌리산업

이날 간담회에서는 「산업안전 대진단」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,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. 앞서 산업부는 법 시행 이후 각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.

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"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·부품·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,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" 라며, "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,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·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*의 확산이 필요하다"고 밝혔다.

* (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포스코, HD현대重, 현대차, 풍산, 대한조선 등) 협력업체 대상 안전관련 노하우 전수, 전문가 교육, 안전 관련 물품구매 비용 지원 등

한편,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"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「산업안전 대진단」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·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"이라 하면서, "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"를 당부했다. 아울러, "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「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」(2.19일 공모)도 적극 활용해 줄 것"을 강조했다.

향후에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	책임자	과 장	이용훈 (044-203-4220)
		담당자	서기관	이도안 (044-203-4224)
			사무관	황동황 (044-203-4228)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연 (044-202-8950)
		담당자	서기관	용윤서 (044-202-895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**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 개요**

1. 추진배경

○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

2. 간담회 개요

○ 일시/장소 : 2.22(목) 10::00~11:00 / 대한상의 8층 KEIT 대회의실

○ 참석자 :

- **(산업부)** 산업정책실장, 산업일자리혁신과장
- **(고용부)** 산업안전보건본부장,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
- **(협단체)** 자동차산업협동조합, 조선해양플랜트협회, 철강협회, 반도체산업협회, 디스플레이산업협회, 배터리산업협회, 바이오협회, 로봇협회, 석유화학협회, 섬유산업연합회, 기계산업진흥회, 뿌리산업진흥센터 (12개 단체)

3. 세부 진행계획(안)

시 간		일 정	비 고
10:00 ~ 10:03	('03)	인사 말씀	산업부 산업정책실장
10:03 ~ 10:06	('03)		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
10:06 ~ 10:20	('14)	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정부 지원대책	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
10:20 ~ 11:00	('40)	업종별 애로·건의	협단체

참고 2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활동 사례

기업	상생협력 사례
삼성전자	**(지원대상)** 협력업체 444개사('23년) **(지원내용)** ▲교육(안전 아카데미 교육) ▲위험성평가(50인 미만 협력사, 취약사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) ▲건강증진(협력업체 대상 건강증진센터 운영) ▲안전보건경영시스템(협력사 안전·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지원)
SK하이닉스	**(지원대상)** 협력업체 195개사('23년) **(지원내용)** ▲교육(계층별 안전특화교육 과장,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운영) ▲안전물품지원(안전보호구, 혹서/혹한기 안전물품 지원) ▲안전 컨설팅(사외협력사 SHE 컨설팅, 맞춤형 매칭지원 컨설팅) ▲작업환경개선 지원(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재정·기술 지원)
현대자동차	**(지원대상)** 중소협력업체 175개사('23년) **(지원내용)** 필수안전장치 구입 및 설치비용 *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(Safety light curtain 등), 지게차 안전장치(후진 경보등, 후방 카메라 등)
포스코	**(지원대상·내용)** 협력업체 ▲안전관리 전문가*(108개사, '22년), ▲교육비(83개사, '22년), ▲안전관리비(93개사, '22년) * 퇴직자가 협력사에 재입사, 현장 안전관리 전담(예. 고위험작업 밀착 관찰 등)
HD현대 중공업	**(지원대상)** 협력업체 78개사('23년) **(지원내용)** ▲교육(안전 아카데미 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) ▲안전물품(안전화 및 도수보 안경 등)
풍산 (울산사업장)	**(지원대상)** 협력업체 + 도급·거래관계 없는 10개사* * ㈜동남팩킹, ㈜신우, 대화공업 등 10개사 **(지원내용)** ▲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활동 ▲月 지게차 협력업체 대표회의 운영(사고사례 공유 등) ▲협력업체 TBM 운영 지원(작업 전 안전대책 등 전달회의)
대한조선	**(지원대상)** 협력업체 33개사 **(지원내용)** ▲안전 아카데미 운영(안전 REMIND 교육, 현장 안전관리 체험 등) ▲동반성장 전담조직 구성으로 체계적 관리(우수협력사 육성 등) ▲위험성 관리 위해 아차사고 적극 발굴(연말 우수협력사 포상, '23년 2,584건 아차사고 등록)

참고 3 「산업안전 대진단」 안내

2024 산업안전 대진단

"안전보건관리체계"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!



산업안전 대진단, 무엇인가요?

- **중대재해 예방** 및 **중대재해처벌법 대비**를 위해 중소 사업장(5~50인) 83만개소의 **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**을 **자가진단**하고,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**안전수준**을 **개선**하는 것입니다.

산업안전 대진단, 왜 해야하나요?

- 「**산업안전 대진단**」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**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**하고 **안전보건관리체계**를 **구축·이행**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**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** 등 **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**를 **이행**함으로써 **중대재해**를 **예방**할 수 있습니다.

산업안전 대진단,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?

- **(온라인)** PC·모바일로 접속하여,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.

1단계	2단계	QR Code
(PC)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⇒ http://www.kosha.or.kr (모바일) 우측의 QR Code 스캔	누리집에 표출된 "산업안전 대진단" 팝업을 클릭 후, 절차에 따라 진행	

- **(오프라인)** 우편·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,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·지원센터를 통해 상담·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- **(산업안전 대진단 상담·지원 문의)** ☎1544-1133

산업안전 대진단, 어떻게 진행 되나요?

대진단 실시	대진단 결과	안전개선 노력	대진단 상담·지원
• 자가진단표 (10개 항목) • 온·오프라인 진단	•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확인 • 대진단 결과 확인	• 정부 지원 신청 (컨설팅/기술지도/재정지원 등) • 자체개선	• 대진단 상담·지원 센터 운영 • 맞춤형 지원

산업안전 대진단,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- 첫째, 대진단 실시 후 **지원신청 사업장**은 신속한 상담·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둘째, **상담·지원센터**에서 **사업장 맞춤형 지원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셋째, **중대재해**를 **예방**하고, **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**할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

참고 4 「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」 안내



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
「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」 안내



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·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*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.

*** 상시근로자 5~49인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**

❖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(1544-3088) 및 관할 일선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또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① 지원대상

-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,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,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
 ※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및 고용노동부 지정기관(안전관리전문기관 등) 제외

② 지원조건

- **(지원규모)** 공동안전관리자 **총 600명**(예산규모 120억원)
- **(지원기간)** 계약체결일 ~ '24년 12월 ※ '24년 최대 8개월간
- **(지원비용)** 채용인원 당 매월 **최대 250만원 한도**(채용 및 운영비의 80% 수준)
 ※ 참여사업장 수 및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하나의 협·단체에서 2명 이상 채용가능

③ 참여 신청방법

- **(신청방법)** **관할 공단 31개 일선기관**에 **온·오프라인**(우편 또는 방문, 메일) **접수** (jsa@kosha.or.kr)
- **(제출서류)** 참여 신청서, 단체(사업자)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**각 1부**

④ 자격기준 등

- **(공동안전관리자 자격기준)**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① (경력)산업안전보건법 관련 **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** 보유자
 ② (경력)산업안전보건법상 **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** 보유자
 ③ (자격)산업안전 관련 **자격증*** 보유자
 * 산업안전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, 기술사(전기안전, 화공안전, 기계안전), 산업안전지도사(전기, 화공, 기계)에 한함
- **(공동안전관리자 주요업무)**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**월 1회 이상 사업장 방문 컨설팅**을 통해 **안전관리체계 구축** 지원
 ① 사업장내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상시교육 실시
 ② 현장컨설팅 및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
 ※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함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